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9년 1월 5일
- 회부일자 : 2009년 1월 6일

## 3. 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8. 4. 18.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도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함

## 4.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 사항 삭제(안 제6조제1항제2호)
- 관계 법령 개정(2008.4.18.)으로 건설을 위하여 지급한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없이 공유재산에 편입

나.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및 대부요율 산정 시

제한규정 삭제(안 제30조제3항제5호)

- 주거용 건물의 기준에서 「건축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는 내용을 삭제

다.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 대비 100분의 10이상 증가 시 감액하는 비율을 확대(안 제36조)

- 전년도 사용료 및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을 경작용 100분의 50,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 100분의 45, 기타의 경우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70으로 일괄 변경

라.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변경(안 제41조제3호)

-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를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변경

마.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가 가능한 재산의 범위 보완(안 제35조제1항)

바. 기타 인용법률 및 직제개정으로 보완

(안 제5조제1항제3호), (안 제6조제2항제2호), (안 제29조제2호), (안 제33조제2항), (안 제34조제1항제1호), (안 제34조제3항), (안 제41조제3호), (안 제47조).

사. 다른 조례의 개정(안 부칙 제2조)

- 「충청북도 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 외 2건(2008. 9.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명칭 등 변경)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삭제(안 제6조제1항제2호)

- 2007회계연도부터 도입된 복식부기 회계제도로 인해 기성대가를 지급한 건물이나 시설물의 공유재산심의회의 행정재산 확정절차가 불필요하고 이를 반영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개정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에서 삭제하게 된 것임.

나.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및 대부요율 산정 시 제한규정 삭제(안 제30조제3항제5호)

- 현행 대부료는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중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1천분의 25이상)과 무허가 건물(1천분의 50이상)에 대해 차등 부과되고 있는 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고 있어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과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다.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 대비 100분의 10이상 증가 시 감액하는 비율을 확대(안 제3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34조의 개정으로 대부료 및 사용료가 전년대비 10%이상 증가한 경우 감액률이 종전 50%에서 70%로 확대됨에 따라 용도별로 차등하여 적용 하던 감액률을 일괄하여 70%로 조정함.

**라.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를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변경(안 제41조제3호)**

- 2008년도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재정경제부)의 제7조 제2항 (보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재산의 매각기준)에 따르면 1989년 1월 24일 이전을 기준시점으로 정하고 있어 국유재산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공유재산의 매각시점을 1989년 1월 24일 이전으로 변경함

**마.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가 가능한 재산의 범위보완(안 제35조제1항)**

-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종류를 신설.

**바. 기타 인용법률 및 직제개정 사항 반영**

- 도 교육청 조직개편 및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보완하였음.

**○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위법령 개정내용 반영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며,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법령용어를 정비하여 도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개정안의 부칙 제2조에서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및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의 직제규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본 조례와의 연관성이 없으므로 관련조례의 개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